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'97. 8. 28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공인 관리기관의 명칭과,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바로잡고
-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에 대하여, 그동안 관수자와 관리요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민원전용 동장 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가 되도록 관련조항을 삽입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공인 관리기관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명칭변경
(안 제1조, 제2조제1항제2항,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, 제13조제1항)
- 직제개정에 따른 실장을 담당관으로
시민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변경
(안 제6조 제1항 제2항, 제7조, 제8조, 제11조 제1항 제2항, 제12조, 제13조 제1항)
- 동 사무장 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
인계인수 대상 공인을 민원전용 동장직인에서 민원실전용 중계민원
구청장 직인을 추가함 (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)

3. 관련법령 - 사무관리규정 제 4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“사업소,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” 을 소속행정기관, 동 및 기관장의 보좌·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” 으로 하고

제2조제1항중 “사업소장, 동장, 부속기관의 장, 보조기관” 을 “소속 행정기관장, 동장, 보좌·보조기관” 으로 하며

같은조 제2항의 “사업소장” 을 “소속 행정기관장” 으로 한다

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, 제8조, 제11조제1항제2항, 제12조중
“시민과장” 을 “민원봉사과장” 으로 한다

제6조제2항중 “사업소장, 동장,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” 를
“소속행정기관장, 동장 또는 보좌·보조기관이나” 로 하며
“사업소장의 보조기관” 을 “소속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” 으로 한다

제10조제1항중 “사업소장, 동장” 을 “소속행정기관장, 동장” 으로 한다

제13조제1항중 “소관 실·과장, 사업소에는 주무계장” 을 “소관 담당 관·과장, 소속행정기관은 선임계장(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 담당관·과장)” 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민원전용 동장직인” 을 “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동장직인” 으로 하며,

동조 제3항중 “민원전용 동장직인” 을 “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 및 민원전용 동장직인”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실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쟁
제1조 (목적)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(사업소, 그밖의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)의 규격, 관수방법,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1조 (목적) ①..... ... (소속행정기관, 동 및 기관장의 보좌·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)
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 ①구청장, 사업소장, 등장부속기관의 장,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, 등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공인은 “별표1”과 같이 사업소장, 등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③④ 생략	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 ①.... 소속행정기관장, 등장, 보좌·보조기관
제6조 (공인의 신조개각) ①공인의 신조·개각은 시민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	제6조 (공인의 신조개각) ①..... 민원봉사과장이.....

